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 설치〉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62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30.

다. 회 부 일 : 2026. 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의 지원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4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 설치 (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설>	○ 별표 2 -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4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기금명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
재 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의 100분의 50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지원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의 지원 ◦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정관에 명시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관 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통신사, 금융기관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함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등을 통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망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 법체계상 국가기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환류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에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

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과징금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안정적 재원조달 요건에 미충족하고, 일반회계에서 개인정보 보호활동²⁾ 및 권리구제³⁾ 등을 위한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어 기금 신설을 통한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낮으며,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개인정보유출기업의 배상이 원칙으로 개인정보유출의 피해를 정부가 직접 구제 시 가해 기업의 책임 회피 및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현행 법령상 과징금을 특정 기금의 재원으로 귀속시키는 사례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피해구제기금, 불공정거래 또는 회계 부정 행위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하는 자본시장 페어펀드 및 포상금 기금 등의 신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2) *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지원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26년) 37억원

3) * 실태 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 등 '개인정보침해방지': ('26) 77억원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4)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동 기금의 주요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되며, 동 재원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소송비용 지원에 직접 사용되어 침해 행위

4)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로 발생한 징벌적 수입을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되돌려주는 바 기금의 재원과 지출 사업간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형성함.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귀속되므로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위한 지원 재원으로 즉각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징수된 과징금 등의 수입을 피해구제 재원으로 직접 환류시키는 경우 정보주체에 적시에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한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측면에서 동 기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3개년 과징금 수입의 예산 및 징수 실적을 보면, 연도별 수납액 및 수납률의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안정적 재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징금 수입의 변동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회계 또는 기타 안정적인 재원과의 병행 등 보완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3개년) 과징금 세입예산 및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25	38,800	38,800	38,800	199,603	197,150	508.1
'24	38,800	38,800	38,800	53,843	29,768	76.7
'23	2,204	2,204	2,204	122,570	120,940	5,487.3

아울러,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u>

문의처
02)6788-5151